

사
문

국 무 총 리 행 정 조 정 실

국무총리 지시 제 22 호 (70-2012) 1975. 12. 18.

수신 :

제목 : 수입선박 및 수리선박에 대한 관세징수 대책

수입선박 및 수리선박중 일부는 소정의 통관절차를 끝하지 아니하고 운항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.

다 음

1. 수입선박에 대하여

가. 재무부 및 관세청은 수입선박중 국내에 입항하고 수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자진 수입신고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소정의 관세를 징수하고 통관처리하되 징수 세액은 개정관세법에 의하여 본할 납부로 특 조치한다.

나. 재무부 및 관세청은 전항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이행한 선박에 대하여는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관세법상의 처벌을 면제한다.

국무총리 지시 제 호

1975. 12. 18.

다. 교통부 및 수산청은 선박의 등기, 등록 및 취업허가에 있어서는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면장의 첨부를 의무화한다.

다만, 외국에서 취득한 선박이 수입신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취항할수 없는 사유가 명백할 때에는 동 선박의 등기, 등록 및 취업허가를 끝난 후 그 내용을 지체없이 관세청에 통보한다.

2. 수 티선박에 대하여

가. 재무부 및 관세청은 해외에서 수리한 선박중 수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자진수입신고 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소정의 관세를 징수 하되 징수세액은 개정관세법에 의하여 본 할 납부도록 조치한다.

나. 재무부 및 관세청은 전항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이행한 선박에 대하여는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관세법상의 처벌을 면제한다.

다. 교통부 및 수산청은 앞으로 외국 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이라도 가능한한 국내에서 수리하도록 지도한다.

라. 재무부는 수 티선박에 대한 관세율을 무세로 조정한다.

끝.

국 무 총 리